

최종 보고서 내용 요약

2024년 7월

지난 2024년 5월 21일에 2024년도 헌장 개정위원회 출범을 발표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카를로 시수라를 위원장으로, 지역사회 지도자 12인을 위원단으로 임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를 보다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시 헌장 내용 전체를 심의하는 업무를 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과 재정적 책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헌장 개정이 필요한지 심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헌장의 전반적인 검토와 일반 대중의 피드백, 전문가 증언, 연구 및 조사 끝에 동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5일 총선에서 뉴욕시 유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깨끗한거리

첫 번째 투표 질문에서, 위원회는 우리 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뉴욕 위생부(DSNY)의 권한을 보다 확대하면서 명확히 밝히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뉴욕시 헌장에 따르면, 뉴욕 위생부는 우리 시 소유 시설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청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관할권으로 인해 중앙분리대 등의 시설을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위생부에서 시장 지시에 따라 시 소유 시설을 청소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도시 거리에 쓰레기 봉투를 장시간 방치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쓰레기통에 넣어 배출함으로써 청결 및 공중보건의 향상을 기하고자, 뉴욕 위생부에서는 쓰레기 봉투 배출 시간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헌장은 쓰레기통 사용 촉진 임무를 뉴욕 위생부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를 비롯해 쓰레기 수거 방안을 규제할 권한이 뉴욕 위생부에 있음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뉴욕 위생부 산하에 노점상단속국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욕시 헌장에는 시가, 보도 이외에 공원과 같은 시 소유 기타시설을 점거한 노점상을 단속할 권한을 뉴욕 위생부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뉴욕 위생부의 노점상 단속권을 시가, 보도는 물론 시 소유 기타 시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정적 책임

두 번째 투표 질문에서, 위원회는 지역 법안 통과 시 미칠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비효율적인 기존의 예산 기한을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법안 통과 시 발생할 비용의 신속한 고려를 위해, 위원회는 재정영향서 제출을 요구하는 헌장 규정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의회는 통상적으로 법안 채택 직전에서야 재정영향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발생비용 추산치를 담은 재정영향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과 법안 작성이 대부분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입법

과정 초기의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재정영향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법안의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업데이트된 재정영향서를 전체 시의회의 법안 표결 이전에 입법 당사자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안 채택 시 미칠 재정적 영향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법안에 관한 재정영향서에 시의회와 관리예산처가 발표한 추산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영향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도 실질적인 검토를 촉진할 것입니다. 재정영향서 절차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는 전문가 및 정부 개선 단체의 의사를 반영한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 관련 기한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신임 행정부가 예비 예산을 편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선거 다음 해의 예비 예산 마감일을 1월 16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1일로 연장된 예비 예산 편성일자를 감안해서 해당 연도의 관련 마감일도 함께 변경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취합한 세수 정보를 집행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회계연도의 집행예산 제출마감일을 현행 4월 26일에서 5월 1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공공치안

세 번째 투표 질문에서, 위원회는 공공치안을 향항하는 지역 법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의견과 심의를 촉진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공치안에 관한 법률의 통과 요건은 다른 사안에 관한 법률의 통과 요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공공치안 조치를 심의하는 현행 절차에 의견 수렴 및 검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대중과 이해관계자 다수의 증언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치안 법안 심의 시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추가적인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신중한 심의를 거쳐 법안을 수립하는 한편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 교도소, 소방서 등 3개시 기관의 공공치안 운영과 관련한 지역 법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에 추가적인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치안 개정안에 대한 전체 시의회의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의회는 해당 투표에 앞서 최소 30일 전까지 일반인, 시장 및 해당 부처장에게 추가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기 통지와 최종 투표 사이의 기간 동안, 시장과 해당 기관은 대중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를 1회 이상추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실질적으로 영향받는 지역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외곽 자치구에서도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 계획

네 번째 투표 질문에서, 위원회는 뉴욕시의 자본 계획 수립 과정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요 정보를 수집하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절차 개정을 제안합니다.

뉴욕시는 인프라에 투자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브래드 랜더(Brad Lander) 감사관의 권고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뉴욕시가 시설물 수리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도시계획부와 관리예산국이 10개년 자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분포, 회복성에

미치는 영향, 부처 운영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시설물의 긴요성 등 기타 요소와 함께 시 소유 시설의 상태 및 유지보수 필요성도 심의하도록 요구합니다.

MWBE 및 현대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투표 질문에서, 위원회는 시 정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헌장 조항 여러 건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을 지원하기 위해 시 헌장에 최고 비즈니스 다양성 책임자(CBDO) 직위를 신설하고, CBDO가 MWBE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조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시 정책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영화 허가를 처리하는 부서인 시장 직속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국(MOME)에 허가 발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은 지자체 아카이브의 효과적인 기능 보장이라는 공통의 임무를 띤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합니다.